

사업자등록 안내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
- 법인은 100분이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살 때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는 처리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때 등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는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모두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휴업하거나 그만 두게 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임시사업장 폐쇄 시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 폐업 또는 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환급세액의 계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내셔야 합니다.

매년 1월, 7월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연 2회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장 변동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등록당시의 사업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기적으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은 확정신고 기간인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므로 매기 확정신고때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가지고 가시면 확정신고와 검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나, 검열기간내에 검열을 받지 않으면 검열을 받지 않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의 판매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2%, 개인일반과세자의 1%, 과세특례자의 경우 0.5%의 무거운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검열기간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을 경우 그 기간중에는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여 검열기간중에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는 1월에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아야 하며 7월에는 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소비세 또는 주류판매와 관련된 사업자의 등록, 신고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개업, 폐업, 휴업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를 기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